

지방재정관련 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5870 [손해배상(기)]

-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한 사례
-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피고 경상남도가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의 내부 규정이라 할 것이다.
- [2]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기

【피고, 피상고인】 1. 경상남도,
2. 주식회사 ○○기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나4645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기전(다음부터 피고회사라 쓴다)이 주식회사 ○○랜드로부터 공정별 하도급을 받아 강릉종합운동장의 조명탑 전 기시설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실적이 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전기공사사업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하도급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인정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석명권의 행사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피고 경상남도가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의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든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위의 2001다33604 판결 참조).

원심은 입찰참가자의 시공실적이 진실한 것인 이상 하도급공사에 관한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규정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그 규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원도급자의 시공실적 증명을 갖추어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회사의 하도급 실적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적격심사 결과에 영향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기공사사업법상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실적을 고려한 적격심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세부기준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전기공사사업법이 전기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하도급할 수 없고 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그의 위반행위가 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그 계약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적격심사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원심의 그 부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사유, 법령을 위반한 위법사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재정법 제63조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등이 없다.

3. 상고이유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소정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4. 11. 선고 2001누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 9. 27. 지

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광주지방법원 2000. 9. 29. 접수 제50925호로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압류처

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같은 사유로 직접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이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제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지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사유를 들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룰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

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취소]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료율을 정하는 사무는 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료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1누1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5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료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속하므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1. 3. 29. 조례 제

27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3조가 제1 내지 6항에서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사용료율을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규정하면서 따로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의 실정 및 공유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관련규정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자치조례의 사항적 한계 내의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관련법령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직접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공공용 재산이고,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어 있는 이상, 공원관리청 이외의 자가 관리수탁한다는 사유만으로 공공용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시설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율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연간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1차 시설물의 가액 및 그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1991. 3. 29. 조례가 개정되어 연간 사용료율이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25로 인화된 경위, 이 사건 2차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 위 시설물에 연간 사용료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할 경우에 무상사용기간이 40년이나 되어 원고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시설물은 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연간 사용료율을 1,000분의 50,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또한, 위 판시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2차 시설물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1차 시설물과는 달리 2차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일관성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 시장이 이 사건 2차 시설물에 관한 연간 사용료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적용하여 그 무상사용기간을 40년으로 해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그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차 사업허가 및 이 사건 2차 사업허가에 의하여 조성하려는 공원시설이 다르고 1, 2차 사업허가의 조건을 동일하게 할 것임을 피고측에서 보장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1차 허가에 누렸던 원고의 법적 지위가 2차 허가시에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이 원고에게 한 약속이 이 사건 2차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

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확약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사업허가조건은 사업에 투자한 모든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하되 기간과 조건은 투자비 회수 가능 범위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인 사실과, 피고가 무상사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인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장관에게 질의하는 등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옳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허가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상사용기간과 조건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식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16. 선고 2000누6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1997년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